

# 관리단체운영규정

## 연혁

- 2020년 3월 24일 제정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에 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회원단체에만 적용한다.

**제3조(관리단체 지정의 통지)** 협회는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회원단체에 통지한다.

1. 관리단체 지정사유
2. 관리단체 지정일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4. 임원인준 취소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협회가 해당 회원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② 해당 회원단체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이하 “회원단체 관계자”라 한다)는 회원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협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협회의 회원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

- 제5조(회원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관계자는 협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협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회원단체 관계자는 협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사무 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협회의 관리단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회원단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처리 한다.
- ④ 회원단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회원단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협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부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및 교체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 이상을 두며, 협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회원단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제·상별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단체 정관(또는 규약)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제반사항
- 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임원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필요한 절차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대회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정위원회 등)를 둘 수 있으며,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